

취약환자 권리보호	5 규정
-----------	------

규정번호	W-7.1.2	제정일	2013년 02월 15일
승인책임자	병원장	최근개정일	2016년 10월 31일
검토책임자	규정관리위원회위원장	시행일	2016년 12월 01일
주무부서	원무과	검토주기	3년
관련근거	의료기관인증기준7.1.2	검토예정일	2019년 10월 30일

1. 목적

- 1. 윌스기념병원(이하 '병원'이라 함)의 취약환자를 정의하고 해당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보장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함이다.
- 2. 직원들은 취약화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이해함이다.

Ⅱ. 정의

- 1. 취약환자
 - 1) 신체적·정신적·성폭력·가정폭력, 가혹행위 피해자 및 유기 또는 방임 등의 학대를 받은 아동 (18세 이하) 및 노인(65세 이상), 여성 등의 환자
 - 2) 유괴 가능성이 있는 소아(영유아)환자
 - 3)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(외국인, 청각장애)
 - 4)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를 비롯해 여러 이유로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환자

Ⅲ. 정책

- 1. 취약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.
- 2. 직원은 관련법에 따른 학대 및 폭력피해자를 위한 보고 및 지원체계를 알고 있다.
- 3. 직원은 소아환자의 유괴를 예방하는 절차를 알고 있다.
- 4. 직원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알고 있다.
- 5. 직원은 장애환자의 편의를 위한 지원체계를 알고 있다.

Ⅳ. 절차

- 1. 학대(아동, 노인학대 등) 및 폭력피해자(성폭력, 가정폭력 등)를 위한 보고 및 지원체계
 - 1)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윤리위원회 간사(원무과장, 내선 1010번)에게 우선 연락하여 아래와 같은 유형에 따라 윤리위원회 간사는 관련기관에 신고 및 지원체계와 연계한다.
 - 2) 일과 시간이 아닌 경우나 공휴일 또는 응급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지정 신고센터에 직접 연락한다.

대상자	기관명	연락처
아동	보건복지부 콜센터	129
노인	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	031-683-1389
여성	여성 긴급전화	1366
어싱	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내 경기남부해바라기상담센터	031-215-1117

3) 윤리위원회 간사(원무과장)는 필요 또는 요청 시 제도적 범위 안에서 정보를 제공, 연결 가능한 지원체계를 연계하며 필수검사 및 신체검진이 필요할 경우 진료과에서 실시한다. 단, 성폭



력 피해자의 검사 및 검진은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한다.

- 2. 소아(영유아)환자의 유괴 예방
 - 1) 병원 내 게시판에 소아(영유아) 유괴관련 게시물을 부착하여 보호자들에게 유괴 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.
 - 2) 소아환자 입원 시 보호자는 항상 환자와 함께 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 간호사실에 알려 소아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.
 - (1) 검사 및 치료실로 이동 시 소아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함께 동반, 이동하며 부득이 하게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 해당 검사실에 연락하고 간호사와 동반하여 이동한다.
 - (2) 면회객의 출입은 보호자와 동반된 상황에서 가능하나 소아환자 혼자일 경우에는 보호자와 의 유선 연락하여 확인 후 가능하다.
 - 3) 소아(영유아)환자 실종 시 절차
 - (1) 정규시간 내
 - ① 소아(영유아)환자 실종 시 보호자는 가까운 부서에 알린다.
 - ② 신고를 받은 직원은 원무과(내선1010)에 연락하고 원무과는 '코드핑크' 방송을 한다.('코드 핑크, 환자이름'을 3회 방송한다.)
 - ③ 각 출입구 근처 위치한 부서의 직원은 출입구를 통제하고 출입을 제한한다.
 - ④ 각 층 부서장은 실종자를 부르며 행방을 찾는다.
 - ⑤ 안전관리감독자는 보호자와 함께 원무과 내 CCTV를 통해 실종자의 행방을 찾고, 찾지 못할 경우에는 112에 신고한다.
 - ⑥ 실종자 발견 또는 경찰서 신고 시 원무과로 연락하여'코드 핑크 해제'방송을 한다. ('코드 핑크 해제'를 3회 방송한다.)
 - (2) 정규시간 외
 - ① 소아(영유아)환자 실종 시 보호자는 가까운 부서에 알린다.
 - ② 신고를 받은 직원은 야간당직자(내선1012)에 연락하고 야간당직자는 '코드핑크' 방송을 한다.('코드 핑크, 환자이름'을 3회 방송한다.)
 - ③ 각 출입구 근처 위치한 부서의 직원은 출입구를 통제하고 출입을 제한한다.
 - ④ 병동의 간호사는 실종자를 부르며 행방을 찾는다.
 - ⑤ 야간당직자는 보호자와 함께 원무과 내 CCTV를 통해 실종자의 행방을 찾고, 찾지 못할 경우에는 112에 신고한다.
 - ⑥ 실종자 발견 또는 경찰서 신고 시 야간당직자에게 연락하여'코드 핑크 해제'방송을 한다. ('코드 핑크 해제'를 3회 방송한다.)
 - (3) 아동유괴가 발생한 부서의 부서장이 사건경위서를 작성하고, 안전관리감독자는 해당사건 의 내용을 취합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병원장에게 보고한다.
- 3.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(외국인, 청각장애인) 및 장애환자를 위한 지원체계
 - 1) 외국인 환자 내원 시
 - (1) 근무시간에는 원무과(내선 1010)로 연락하여 통역직원을 연결하여 언어를 지원한다.
 - (2) 야간 및 휴일에는 BBB통역무료서비스(1588-5644)를 이용한다.
 - 2) 장애환자 (청각 ,구음 등) 내원 시
 - (1) 장애환자 내원 시 접수보조 및 진료실까지의 이동을 돕는다.
 - (2) 윤리위원회 간사(내선 1010)에게 연락하고 원무과는 관련기관을 연결해준다.
 - ① 안양시 농아인협회: 031-466-1123



- ② 한국 농아인협회: 070-7785-1923
- ③ 안양시 시각장애인 협회: 031-469-1128
- 3) 장애환자를 위한 편의시설
 - (1) 장애인용 화장실을 운영한다.
 - (2)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장애인 외의 차량 주차는 통제한다.
 - (3) 엘리베이터 내 층별 점자블록 버튼이 설치되어 있다.
 - (4) 장애환자 필요 시 휠체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.
 - (5) 병원 내 장애인용 화장실에 비상벨.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.
 - (6) 화재 시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를 설치 운영한다.
- 4. 직원교육

신입직원 교육 및 연 1회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취약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직원들이 숙지 할 수 있도록 한다.

환자 및 보호자 교육
취약환자 권리보호 내용을 원내에 게시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.

V. 참고

- 1. 법률 제 10339호 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 제2호(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)
- 2. 법률 제 9964호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2항 제1호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)
- 3. 법률 제 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(신고의무)
- 4. 법률 제 8580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호(신고의무 등)

입안자	규정관리위원장	
승인책임자	병원장	
서명일		